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05.13

**2020. 05. 13.**

**제이더블유신약㈜**

**제 1 조 (목 적)**

1.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구 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 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장)**

1. 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 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조 (기능 및 권한)**

1.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이사의 보고 수령

(3)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4) 외부감사인(이하“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보수에 대한 결정

(5)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6)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7)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8)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4.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 7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9 조 (감사록)**

1. 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0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부칙(2020.05.13.)**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